

창업인을 위한 세무회계 가이드 ②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방법 및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알아둘 점

+ 최재영 동서회계법인 이사



제1편에는 사업자 등록과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설명하였고, 제2편에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알아둘 점들을 설명합니다. 먼저 창업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게 될 때 발생하는 각종 세무상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1. 부가가치세의 개념이해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Added Value)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어떠한 재화이든 완성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려면 생산단계에서는 원재료의 매입, 기계의 작업, 생산인력의 투입, 외부용역의 구입, 임차료의 지급, 이자의 지급 등의 원가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생산자는 이러한 원가와 자기의 마진을 추가하여 도매유통업자에게 판매하게 되며 도매유통업자는 창고보관료, 판매인원 인건비, AS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의 원가와 자기의 마진을 추가하여 소매유통업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소매유통업자는 비슷한 원가와 마진을 반영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각자 자신의 판매가격에서 전 단계에서의 매입가격을 제외한 부분이 자기 단계에서의 가치증식분인 부가가치이고 부가가치세란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상인 A씨가 도매상인 B씨로부터 100만 원(부가가치세액 10만 원 별도)에 어떤 상품을 구입하여 130만 원(부가가치세액 13만 원 별도)에 판매하였다면, 소매상인 A씨가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3만 원(13만 원 - 10만 원)이며 소매상 A씨가 자신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3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판매한 상품에 대한 세액 13만 원을 매출세액이라 하며, 구입한 상품에 대한 세액 10만 원을 매입세액이라 합니다.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세액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 143만 원(공급가액 130만 원 + 부가가치세액 13만 원)에 포함되게 되므로 결국 부가가치세는 그 물건을 구입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에 내는 부가가치세액은 사실은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최종소비자 대신 내는 세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 하며 부가가치세 및 주세 등이 대표적인 세금의 종류입니다.

2. 세금계산서의 발행

세금계산서(Tax Invoice)라 함은 거래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기재되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수출실적명세서로 거래의 증빙을 소명하며 외국에서 외화로 용역대금 등을 수취할 경우에는 외국환매입증명 등을 첨부하여 영세율로 부가가치신고를 하게 됩니다. 수출재화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외에서 송금 받는 용역비는 외화획득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본인의 매출에는 해당되므로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는 반영이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 교부의무자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객관적으로 공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종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인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의 과세사업자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나. 교부대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따라서, 수출과 관련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실지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지만 세액을 “0”으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ex, 수도물, 서적, 미가공식료품, 토지의 공급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매매할 경우 상가 건물은 과세대상이고 상가가 정착해 있는 토지는 면세대상이므로 상가를 “사업자”가 매매할 경우에는 건물 분에는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명기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면서 혼동하거나 간과하기 쉬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사례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에서 수주하고 공장에서 제조하여 판매처에 납품하는 경우
동일한 회사라도 사업장이 각각 다른 곳에 있는 경우에는 본점과 공장을 모두 별도의 사업자로서 등록하여야 하며,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반드시 재화가 납품되는 공장에서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본사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공장에 이전하여 제품제조에 이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본사에서 공장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 이동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해 판매장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상호 대응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제조공장에서 로드샵으로 의류를 이동시키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외상매출금회수를 위한 재화의 환수

당초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대금의 미회수를 사유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회수하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 무상사급

임가공업체가 추가적인 원재료의 매입 없이 원청에서 공급한 자재만을 이용하여 임가공용역을 수행한 후 납품하는 경우에는 임가공용역비만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나, 임가공업체가 별도의 원재료를 매입하여 원청에서 공급한 자재와 혼합가공하고 납품대금에서 원청에서 공급한 자재금액을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원청에서 공급하는 자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재화와 용역의 무상공급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화의 무상공급 또는 자가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입니다. 왜냐하면 재화의 생산 또는 구입시 관련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대가 없이 자가 소비하거나 무상공급을 하더라도 매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요구되는 거래의 구분이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복잡한 경우가 많고 소홀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미수취 등으로 인하여 가산세 등 각종 세무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미심적은 거래는 항상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교부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사업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상기와 같으나 특례에 의하여 별도로 규정된 교부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받을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조건부 판매나 기한부판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용 후 7일 이내에 구입취소가 가능한 경우 7일이 지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 장기할부판매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받고 인도일로부터 최종할부금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중간지급부 조건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다만, 최종 잔금 수취일이 재화가 인도된 날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잔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

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여야 합니다. 비록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도 계약서상 중간에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하여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 이 계약서를 근거로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 수취 실질에 따라 다시 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는 민감한 문제로 항상 사업자 자신의 민법 또는 상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상 가장 중요한 증빙을 갖추는 일로서 계약서를 항상 작성하는 업무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두계약이나 선납품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공급가액 및 공급시기의 입증, 분쟁발생시 소명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계약상 의무인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는 검수확인서 또는 상대방의 확인이 있는 거래명세표 등을 반드시 징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라. 세금계산서의 작성방법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 미기입 또는 오기입시 가산세 대상

-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④ 작성 연월일

[임의적 기재사항]

- ① 공급하는 자의 주소
- ② 공급받는 자의 상호 · 성명 · 주소
- ③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 ④ 공급품목
- ⑤ 단가와 수량
- ⑥ 공급 연월일
- ⑦ 거래의 종류
- ⑧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The image shows a standard Korean Tax Invoice form. It has a header section with fields for the supplier's and recipient's registration numbers and names. Below this is a table for item details with columns for item name, quantity, unit price, and total amount. At the bottom, there are fields for the total amount, tax amount, and a QR code for electronic filing.

세금계산서 양식

세금계산서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의 차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종이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형태	종이	전자파일
인감날인	실제인감	전자서명(공인인증서)
수신방법	직접 또는 우편수신	상대방에게 고지한 전자세금계산서 수신 e-mail로 발송
자료보관 형태	종이로 철을 만들어 보관	전자파일로 국세청보관
자료검색	수작업 검색	국세청 이세로사이트(http://www.esero.go.kr)에서 조건검색 등 맞춤검색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개별거래처별 명세 기재	국세청 전송본은 개별명세 기재하지 않고 총액만 기재
개별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후 익일 내에 반드시 국세청 전송
월합세금계산서 교부(*)	부가가치세법상 교부시기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발급(전자서명)하고 전송은 그 익일까지(익월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월합세금계산서라 함은 각 거래처별로 월중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월간 거래를 모두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과세기간이라 함은 1기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6개월간의 기간(1기 확정신고기간)과 2기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간의 기간(2기 확정신고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이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중간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 말일의 익월 10일까지(4월 10일, 10월 10일) 고지하고 이를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만약 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사례

에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나 대규모 고정자산 취득으로 인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적에 따라 자진하여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은 각 과세기간별 신고기한일인 7월 25일(예정신고는 4월 25일) 및 1월 25일(예정신고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각 신고기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담당 세무공무원이 일정규모 이상의 환급세액을 지급하기 전에 환급사유를 파악하게 됩니다. 고정자산 취득 또는 특별한 재고의 일시적 대량매입 등과 관련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환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의 종류]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으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간이과세자 0.5%)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3)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5) 타인명의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6)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1%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5%
(7)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1%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8)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9) 납부불성실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3/10,000) × 일수
(10)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등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1)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2)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10,000)×일수[한도: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1%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1%
(1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미전송한 경우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공급가액×0.3%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분 (2),(3),(6),(13),(14) 배제
- (4),(5) 적용분 (1),(6),(7) 배제
- (6) 적용분 (2),(3) 배제
- (2) 적용분 (3),(13),(14) 배제
- (3) 적용분 (2),(13),(14) 배제